

#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제적 ·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mographic, Econom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Debtors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연구교수 김 미 라\*\*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 수 황 덕 순\*\*\*

Institute of Regional Development, Sunchon National Univ.

Research Professor : Kim, Mi-Ra

Dep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

Professor : Hwang, Duck-Soon

---

### <Abstrac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debtors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though research in this field is needed. The scarcity of research means that public policy and perception are being made with inadequate information and, to a certain extent, based on personal prejudices and misconcep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demographic, econom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ebtors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this study, an in-depth interview was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The focus of this study is debtors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y were all under 40 and received relatively high educations. Interestingly, they showed a high tendency to use debt and an inability to manage their money. They had short time horizons and imperfect self-control in consumption and borrowing decisions. Monthly income, expenditures, asset and debt of the debtors, and monthly payment to creditors were reported. There were a lot of reasons for their bankruptcy : business failure, job loss, the cost of raising children, and expenditures for entertainment causing them to file for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One of the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as the discovery that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nearly the same.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suggest that financial education and counseling must conside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주요어(Key Words) : 개인회생절차(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변제(payment), 시간지평(time horizons), 자기통제(self-control),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6-353-C00063).”

\*\* 주 저 자 : 김미라 (E-mail : mrkim@jnu.ac.kr)

\*\*\* 교신저자 : 황덕순 (E-mail : hds420@jnu.ac.kr)

## I. 서 론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화두 중의 하나는 '신용불량자'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는 '파산'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총재산으로서 총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지경의 경제적 파탄에 이른 현상을 말한다.

개인이나 가계가 파산에 이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개인적인 수준에서 살펴보면, 사업실패나 의료문제 또는 도박이나 낭비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신용공급자의 신용과다공급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파산의 원인을 찾아보면, 실패한 금융정책과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은 변제능력을 넘어서는 많은 대출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경기침체로 인해 실패하여 파산하는 경우처럼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은 미시·거시적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파산의 요인들은 개인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으며,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들 또한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 최근 주춤했던 신용과다공급의 문제도 최근 신용공급자들이 길거리영업을 활성화하고 고금리 대출영업(카드론)에 집중하는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함으로써, 반복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개인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재건형 파산 즉 개인회생절차와 청산형 파산 즉 개인파산절차의 두 가지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소유 자산을 보유하면서, 미래 소득으로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시켜준다. 개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는 반대의 협상을 제시한다. 즉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미래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대신, 현재의 모든 소유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아서 경제적으로 갱생하도록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같은 파산절차이면서도 개인파산절차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유사한 절차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었고, 그 연혁 또한 짧다(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 그 결과 법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김용철, 2007), 제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나 채무자를 믿고 보증을 서준 보증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자율을 인상함으로써 이로 인한 손실분을 충당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채무자 자신에게도 소송비용과 같은 직접 비용과 심리적 비용과 같은 간접 비용을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절차는 정기적인 소득

을 가졌으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채무자에게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안이 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복지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절차의 신청건수가 경제나 인구 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는 개인파산제도가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 파산상태이지만 아직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잠재파산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신청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가계부문의 파산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며(유경원, 2006), 이를 위해 아직 도입초기에 있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국내·외적으로 개인파산에 관한 연구에 비해 개인회생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국외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제도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Drake & Morris, 1983; Sable, 1983; McLaughlin, 1984; Williams, 1985; Butler, 1989; Sepinuck, 2000; Hilderbrand III, 2005; Bermant & Braucher, 2006),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Sullivan 등, 1994, 1997; Pollak, 1997; Norberg, 1999; Lown & Rowe, 2003; Norberg & Compo, 2007; Evans & Lown, 2008),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개인회생의 제도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김경욱, 2003; 박승두, 2004; 박형준, 2004; 정준영, 2004; 정갑주, 2006; 최정익, 2006; 김용철, 2007),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의 특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2005)의 연구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교육 프로그램이 이를 토대로 바른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복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상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에게나 국가적으로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파산이 신용사회의 인프라로서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경우 최근 파산절차의 남용을 방지하는 쪽으로 파산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개인파산절차의 급증에 따라 개인파산절차의 남용여부와 개인회생절차로의 유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경제적 특성 외에도 부채에 대한 태도와 같은 심리적인 특성과 부채증대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수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이 파산의 지경에 이를

만큼의 과도한 채무를 갖게 된 경위와 사회경제적 및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연구는 현행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개인회생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 및 교육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제도와 함께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적 채무재조정 절차의 한 가지로서,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경제적인 조건은 매우 다르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달, 생계비를 제외한 가처분 소득을 모두 사용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되도록 하는 절차이다. 매달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임금소득자 뿐만 아니라 영업소득자 등 영업소득신고의 유무나 고용형태에는 상관이 없다. 단, 변제를 통해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때문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부채규모의 제한이 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채권자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이나 가계 도구와 같이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이용하여, 채무를 최대한 변제한 후 면책결정을 받아 새롭게 출발하는 절차로서, 절차의 신청에서부터 면책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짧다. 그러나 개인파산 신청자의 경우 대부분 면제재산을 제외하면 변제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고,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개인회생의 경우와는 달리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한 과채무 등의 면책불허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 면책을 허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는 면책을 받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첫 단계로 변제계획안이 제출되면, 개시결정 후에 채권자의 이의에 대해 채무자가 진술을 해야 하는 채권자 집회가 열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자들이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음은 향후 5년 동안 매월 이루어져야 하는 채무변제를 포함한 예산인 변제계획의 인가(연체정보 등록해제) 단계이며, 인가가 되면 개인회생위원의 감독 하에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폐지 또는 면책이다. 변제계획이 적절히 수행되

지 않으면 인가가 폐지되어, 연체정보가 재등록되고 추심이 재개되지만, 변제계획이 잘 수행되면 잔여부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 대신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은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도박이나 과소비와 같은 면책요건상의 제약을 두지 않으며,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점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절차 대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이유로는 '일정금액이라도 변제하는 것이 몇몇하다고 생각해서'와 '파산시 사회적으로 매장되므로'라는 응답이 '자격제한이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서' 라는 응답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제도상의 차이보다는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때문에 개인파산절차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한국개발연구원, 2005), 파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면, 개인회생절차보다 개인파산절차의 이용이 늘어날 것이다.

### 2. 개인회생절차의 현황

2004년 9월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자,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 때문에 그동안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였다(김용철, 2007).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건수는 2004년 8,692건, 2005년 48,541건, 2006년 56,155건으로 증가하다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6년을 정점으로 해서 오히려 그 수가 감소해서, 2007년 51,416건, 2008년에는 지난 5개월 동안 19,153건이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개인파산절차에 대해서도 홍보가 많이 되어(김용철, 2007), 개인파산절차의 신청건수가 2003년에 3,856건에서 2007년 154,039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건수와 개인파산절차의 신청건수를 비교해 보면, 2005년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율이 55.6% : 44.4%의 비율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건수가 많았지만, 2006년에는 31.2% : 68.8%, 2007년에는 25% : 75%로 계속 감소하여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파산절차의 신청건수가 더 많았다. 미국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자와 개인파산 신청자의 비율이 1997년 43% : 56%(Lown & Rowe, 2003), 2005년 약 30% : 70%(한국개발연구원, 2005)의 비율로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전통적으로 채권자의 측면에서 있었던 유럽의 파산법은 복지제도가 점차 민영화되어감에 따라 채무자를 더 보호하는

&lt;표 1&gt;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건수

절 차 \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개인파산(비율)	3,856	12,317(58.6%)	38,779(44.4%)	123,691(68.8%)	154,039(75.0%)
개인회생(비율)	-	8,692(41.4%)	48,541(55.6%)	56,155(31.2%)	51,416(25.0%)
합 계(비율)	3,856(100%)	21,009(100%)	87,320(100%)	179,846(100%)	205,455(100%)

자료출처 : 김용철(2007), 2005년 이후 자료는 대법원 사법통계자료 이용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유럽에 비해 복지제도가 부족한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채무자 옹호적인 파산법을 운용하였으나 점차 부채를 더 많이 갚도록 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Huls, 1997). 특히 2005년 개정된 미국 파산법은 재산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기 어렵도록 하여 개인회생절차로 유도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김경옥, 2005).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소송 건수의 급증과 더불어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전인 1978년 미국 파산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과 개인회생절차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건수가 1년에 약 30만건 이상인(Norberg & Compo, 2007) 미국의 경우, 아예 소송이 기각되는 비율이 매우 높고(Sullivan 등, 1997), 개인회생절차가 인가된 경우에도 약 13%가 개인회생절차의 초기에 개인파산절차로 전환하였으며(Lown & Rowe, 2003), 개인회생계획을 수행하는 채무자의 60% 이상이 계획을 완료하지 못하여(Borrus, 2002), 전형적으로 개인회생 채무자의 약 1/3만이 면책을 받는다(Norberg, 1999; Norberg & Compo, 2007; Evans & Lown, 2008). 우리나라의 경우 인가된 사건의 변제수행기간이 아직 길지 않아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폐지된 사건의 비율이 2006년 7월말 49%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 개인회생절차를 수행하다가 중도에 폐지하고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폐지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용철, 2007). 현행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의 반복적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신청을 금지하고 있으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 또는 폐지된 경우에도 얼마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3. 선행연구고찰

개인회생 채무자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개인회생 채무자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 변수에 대한 논의에 비해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으로, 여기서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와 부채에 대한 심리적 변수의 영향을 검토한다.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 (1) 성별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2005)에 따르면, 개인파산절차 신청자는 남성(34%)에 비해 여성(66%)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과 달리, 개인회생절차 신청자는 여성(42%)에 비해 남성(58%)의 비중이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나, 성별은 파산관련 절차들의 신청에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간 선택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고 보고하였다.

Pollak(1997)은 과거에 비해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모두 부부공동소송과 남성소송은 감소하고 여성소송은 증가하는 추세로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는 여성이 28.7%, 남성이 25.1%이며, 나머지는 부부공동소송(46.2%)이라고 하였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71건의 개인회생 소송에 대해 개인회생 관재인(trustee)이 법원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Norberg(1999)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48.6%, 남성이 31.4%, 공동이 20%라고 보고하였다. 7개 연방법원의 1994년 개인회생 소송 중 계통표집(systematic sampling)을 통해 표집한 795건을 분석한 Norberg와 Compo(2007)의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여성이 36.1%, 남성이 36.9%, 공동이 26.9%로서, 주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주의 인구분포상의 차이와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2) 연령

한국개발연구원(2005)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가 31세~40세의 경우 가장 많았고, 50세 이하가 90.2%를 차지해 청·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61세 이상 고령자는 1.5%로 이는 노인층이 정기적인 소득원을 증명해야 하는 회생의 인가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음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또한 연령은 파산관련 절차의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파산 또는 회생 간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own과 Rowe(2003)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연령이 19세부터

77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35.7세(중위수 = 33)라고 하였다.

### (3) 교육수준 및 직업

한국개발연구원(2005)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 신청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88.1%로서, 25세 이상 인구 중 고졸이상의 비중인 63.7%보다 월등히 높고, 개인파산절차 채무자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고학력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파산절차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84.8%가 임금근로자로서, 이는 전체 근로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인 65.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들 중 전문직 및 사무직의 비중은 53.1%이며, 자영업자에 비해 임금노동자가 파산관련 절차들을 신청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자의 직업보유기간은 1년 이하인 경우가 6.7%이며, 5년 이상 장기근속의 경우는 36.0%로 전체 근로자의 40.6%에 비해 낮으며, 평균 직업보유기간은 62개월이다(한국개발연구원, 2005).

Lown과 Rowe(2003)의 연구에서는 개인회생절차 채무자의 직업보유기간이 평균 4.1년(중위수 = 1.5)으로서, 노동시장에서 개인파산절차 채무자(평균 = 3.3년, 중위수 = 1)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Evans와 Lown(2008)은 직업보유기간이 개인회생절차를 완료하여 면책을 받을 가능성과 정적 관계에 있으며, 이는 실질여부가 개인회생절차의 완료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 (4) 결혼여부 및 가구크기, 주거상황

한국개발연구원(2005)은 개인회생절차 신청자의 60.1%가 현재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7.9%가 이혼경험이 있으며, 또한 미혼인 경우 개인파산절차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Lown과 Rowe(2003)는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회생의 채무자는 42.9%로, 이는 해당 지역의 결혼율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Evans와 Lown(2008)도 미혼인 경우 1인 소득에 의지함으로써 실직이나 비취업 문제에 대해 더 취약하므로 개인회생절차의 완료여부에 부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개인회생절차의 완료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한 로지스틱분석 결과 미혼인 경우 개인회생의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05)은 개인회생절차 신청자의 평균 가구원 수가 3.4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3.1명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부양가족은 평균 1.5명이며, 가구원수는 파산관련 절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파산관련 절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Norberg(1999)의 연구에서는, 이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여성 신청자의 경우 2.06명으로 남성의 경우 2.59명과 공동인

경우 3.73명보다 가구원수가 작았으며, Lown과 Rowe(2003)의 연구에서는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 비상시를 대비한 저축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개인회생 채무자의 평균 가구원수는 3.3명(중위수 = 3)으로 미국평균 2.6명에 비해 많아서, 저소득, 많은 가구원 수, 큰 주택, 자동차 문제의 조합이 채무자를 재정적으로 더 어려운 상태가 되게 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Evans와 Lown(2008)은 부양자녀의 존재가 개인회생절차의 탈락에 강한 예측자로서, 자녀양육비가 개인회생절차의 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05)은 개인회생절차 신청자의 자가소유율은 5.95%이고, 55.4%가 임대, 30.4%가 무상거주로서, 이는 전국 또는 서울시 전체의 주거상황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자가소유여부는 파산관련절차 선택과 개인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파산관련 절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고, 자가소유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경향이라고 보고하였다. 국외 연구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신청자의 54%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며(Norberg & Compo, 2007), 주택 모기지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완료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orberg, 1999; Evans & Lown, 2008). Norberg(1999)는 이에 대해 저당채산을 지키려는 의지가 개인회생절차의 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2) 심리적 특성

### (1) 부채에 대한 태도

이기춘과 박근주(1997)는 부채억제신조 준수정도가 낮을수록 신용카드연체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이은영과 허은정(2005)은 연체불가태도가 낮을수록 연체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집단간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로, 여대생과 주부 간 차이를 비교한 김정훈(2000)은 신용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 인식과 조건적 허용, 예산관리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부정적 인식과 조건적 허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대학생소비자 중 신용카드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간 비교한 조사한 김효정(2003)은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를 계획적 지출, 부정적 인식, 무절제 사용, 조건적 허용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계획적 지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연체미경험자 간 차이를 비교한 성영애와 정희영(2006)은 신용사용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집단에서 더 높았고, 신용결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연체미경험자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Thaler(1990)는 유동성을 제약하는 두 가지는 자본시장이 주는 제약과 개인들 스스로 부과하는 제약으로, 후자가 개인의 유동성제약에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부채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부르는 '단지 빚을 지지 않고 살겠다'라는 자기 규칙이라

고 설명하였다. Livingstone과 Lunt(1992) 그리고 Lea 등(1993)은 부채행동과 부채태도 간에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Lea 등(1995)은 부채가 많은 집단과 중간 집단, 부채가 없는 집단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부채태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 (2) 시간선호율(rate of time preferences)

현재지향적인 사고가 강한 경우 불확실한 미래의 요구를 포기하고,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키며, 심지어 차용을 통해 미래의 소득을 당겨쓰는 행동을 하게 된다(이승신 등, 2005).

신용카드에 대한 연구에서 Bar-Gill(2004)은 현재의 편익을 크게 평가(할인)하고 미래의 편익을 더 적게 평가하는 소비자를 '과장된 할인자(hyperbolic discounter)'라고 정의하고, 과장된 할인자가 시간선호에 관한 경험이 적을 때, 미래 대출에 대한 자신의 의지력을 과대평가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소비자가 시간선호에 관한 경험이 적다고 하였다.

비슷하게 부채 집단간 시간지평(time horizons)의 개념차이를 조사한 Lea 등(1995)은 채무변제기간을 앞당기거나, 받을 수 있는 돈을 1개월 후에 받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 부채가 많은 집단은 주어진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을 원하거나 아예 앞당기길 원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보고하였다.

### (3) 자기통제(self-control)

할인율은 시간선호율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자기통제부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부채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정확히 계산과 함께 불확실에 대해서도 고려한 후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지만, 인간은 경제학의 기본 가정처럼 늘 합리적이지는 않다.

생활주기이론(life-cycle theory)에서는 개인이 최적 소비계획을 세우고 강철같은 의지로 이를 수행해 나간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개인은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자신의 미래 행동에 제약을 가져올 선택을 하게 된다(Thaler, 1990).

Bar-Gill(2004)은 소비자들이 흔히 빌리지 말아야지 하는 사전의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출을 한다고 하면서, '약한 의지력'의 다른 표현인 불완전한 자기통제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소비와 저축에 관련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획득시기와 대출결정 간의 시간 간격이 미래 대출의 결과를 저평가하고 대출하게 하는 불완전 자기통제를 가져오게 하며, 한 번에 큰 부채가 아니라 '한 번에 조금씩(a-little-at-a-time)'이 자기통제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하였다.

실제로 신용카드 발급자들이 '안 써도 되니까 만들기만 하라며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자기통제에 실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불완전한 자기통제를 예상하고 펼치는 뉴로마케팅의 하나인 것이다.

### 3) 경제적 특성

#### (1) 월평균 가계소득과 지출

김용철(2007)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사건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채무자의 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약 35%,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35%로서,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05)은 월평균 가계소득은 166만원이고, 월평균 소비지출은 121만원으로 평균적으로 약 45만원의 흑자를 보여주었으나, 76.2%가 가계수지상 적자라고 하였다. 이를 사회 전체의 평균에 비교했을 때 월평균 가계소득은 92.8%, 월평균 소비지출은 61.5%로서, 소비지출이 채무상환으로 인해 사회 전체의 평균에 비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소득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하위 20%와 상위 20%를 제외한 전 소득 분위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개인부실 채무의 문제가 일부 저소득 계층에 고립된 문제만은 아님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파산절차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Norberg(1999)는 연구대상자의 연소득이 \$14,400(중위수)로서, 연구대상자의 1/3이 1996년 빈곤선인 \$12,98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아서 소득측면에서 볼 때,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Lown과 Rowe(2003)의 연구에서는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월평균소득(\$2,000 = 중위수)은 월평균지출(\$1,598 = 중위수)보다 조금 더 많고, 이 중 \$600(중위수)를 지출하고 있는 주거비의 비중이 크며, 월 변제금액은 약 \$400(중위수)이라고 보고하였으며, Norberg와 Compo(2007)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연소득이 평균 \$22,512이지만, 메릴랜드의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우 \$14,958에서 테네시의 경우 \$38,400으로 주(state)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면서, 이는 제도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상황정도에 대한 제도적 차이에 따라 신청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2) 자산과 부채, 부채부담

김용철(2007)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자산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70% 이상이라고 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2005)은 평균 1,481만원으로 사회전체 평균의 27.7%에 불과했으나, 개인파산 신청자의 343만원보다는 훨씬 많았는데, 이는 제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구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총부채는 6,480만원으로, 부채부담이 클수록 파산관련 절차들을 신청할 확률이 높으며, 부채부담이 적을수록 개인파산절차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산의 수준도 낮으며, 가계수지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지급불능 상황에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Norberg(1999)는 연구대상자의 총부채가 \$20,746(중위수)

이며, 소득대비부채비율은 123%(장기 모기지 제외)로서, 이는 대다수가 소득에 비해 과중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 모든 소득을 부채 상환에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득대비부채비율과 개인회생절차의 완료는 유의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였다. Lown과 Rowe(2003)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총부채가 \$41,626로서 개인파산 채무자의 경우보다 많고, 이중 무담보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개인파산 채무자의 2배였으며, 소득대비부채비율은 173.4%로서 개인파산 채무자의 194.5%보다는 낮았다고 하였다.

### (3) 원금변제율과 월 변제금액

한국개발연구원(2005)은 개인회생의 신청자가 변제계획서에 제시한 변제기간은 평균 약 65개월이었으며, 변제율은 평균 61.7%로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약 70만원이라고 하였고, 김용철(2007)은 약 25%가 원금의 20%미만을 변제하고, 또 약 25%가 원금의 30%미만을 변제하여, 개인회생 채무자의 약 50%가 원금의 30%미만을 변제한다고 하였다. 또 월 변제금액은 20만원 미만이 30%, 20만원~40만원 미만이 30%로서, 개인회생 채무자의 약 60%가 매월 40만원 미만을 변제한다고 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05)은 소득과 부채, 부채부담과 같은 경제적인 변수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과 같은 파산관련 절차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으나, 성별이나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Evans와 Lown(2008)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면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한 결과, 기대와는 다르게 소득과 부채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결혼여부나 부양자녀유무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변수보다는 인구학적 변수가 면책을 잘 예측한다고 하였다. 또한 Lea 등(1995)은 부채문제가 경제적인 변수와 분명 상관이 있지만, 인구학적·경제적인 변수만의 기능은 아니라면서 심리적인 변수들을 추가하였으나, 심리적 변수보다는 인구학적·경제적 변수의 설명력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개인회생 절차의 이용에는 경제적인 변수가, 절차의 수행에는 인구학적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채무 발생원인과 사회인구·경제적·심리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에 대해 바로 알고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자신 또는 가족원이 개인회생자임을 밝히려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문제로 인해 표집틀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연구자의 입장에서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연구방법을 적용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잘 드러내지 않는 집단이나 소수집단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유용한 방법인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개인회생 채무자와 이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와 사무장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한 표본의 크기는 남녀 각각 5명씩으로 전체 10명 내외로 계획하였으며,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직업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크기는 한 명에서부터 연구자가 필요한 만큼, 혹은 주어진 시간과 자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구할 수 있는 만큼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Padgett, 2001).

먼저 광주광역시 법무법인 1곳에 해당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개인회생 채무자들 중에서 연구대상자를 추천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응답률을 고려하여 남녀 각각 10명씩 전체 20명의 연구대상자 목록을 요청하였으나, 9(여성 6, 남성 3)명의 연구대상자 목록을 제공받았다. 제공받은 목록을 이용하여 전화로 면접참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쌍이 부부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 1명을 제외하였고, '전화면접만 가능하다'거나 '365일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므로 불가능하다'고 한 2명과 2회에 걸쳐 면접을 보이코트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 면접을 완료하였다.

2차로 광주광역시 개인 변호사 사무실 1곳에 연구대상자를 섭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동안 해당 사무실에 접수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건수는 총 4건이었으나 1건은 신청을 취하하여 총 3건을 인가받았으며, 이 중 면접을 허락한 남성 2명에 대해서 면접을 완료하였다.

면접은 2008년 1월 26일부터 2008년 3월 2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총 7명(여성 2, 남성 5)의 연구대상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였고, 면접에 앞서 면접내용을 계획하고 면접이 완료된 후에 조사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법률사무소와 사무장에 대해서도 면접을 실시하여, 면접내용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 2. 연구방법

먼저 각 변호사에게 소속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사람들의 목록에 의거해 순차적으로 전화를 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의도를 타진한 후, 면접에 응한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다음, 연구자가 제공받은 목록을 토대로 하여, 전화로 연구의도를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재확인한 후, 면접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날짜와 시간은 연구대상자의 사정에 맞추어 정했으며, 기본 면접은 2회로 계획하였으나, 사례에 따라 시간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기도 하였다.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1회에 최소 1시간 10분에서 최대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고, 면접이 완료된 이후에도 연구대상자들이 연구자에게 사적인 이유(보험영업이나 법률 자문)로 전화를 하거나,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근황을 탐색하기 위해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면접 장소는 연구대상자의 가정형편을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구대상자의 집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여성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가살이나 어린 자녀들에게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사적영역인 가정을 공개하길 꺼려했기 때문에, 그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나 사무실 주변의 조용한 음식점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적영역을 공개하지 않은 연구대상자들도 대부분 면접도중에 자신의 주소를 밝혔다.

매 회 연구대상자의 양해를 얻어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는데, 대부분은 이를 비교적 쉽게 수용하였으나, 남성 1명은 이를 거부하여 면접내용을 최대한 기록하였다. 녹음된 주요 내용은 연구보조원 1인의 도움을 받아 녹취하였으며, 다른 연구보조원 2명에게 녹취 기록을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 3. 면접지침

심층면접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면접과는 달리 면접내용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좋은 질문을 통해서 좋은 자료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조화된 면접(non-structured interview)은 보다 새로운 정보와 통찰을 가질 수 있어서 엄격한 지침을 갖는 것보다 좋을 수 있으나, 필요한 정보를 놓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면접지침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구조화된 지침을 가지고 진행되는 면접조사는 설문조사를 말로 대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회생자의 사회적 관계유지나 심리적인 특성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생활실태와 부채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반구조화된 면접을 사용한다. 반구조화된 면접은 탐색해야 할 일련의 질문이나 쟁점을 미리 가지고 시작하지만 정확한 언어화나 질문의 순서를 미리 결정하고 면접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상황과 연구의 진행에 따라 질문내용과 연구의 방향을 재구성하는 등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준비한 기본적인 면접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 직업경력, 결혼 및 이혼 경력, 주거 상황을 포함한 사회적

구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가계수지와 자산보유상태를 파악한다. 셋째, 부채규모 및 부채부담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부채태도, 시간선호율, 자기통제, 소비태도 등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한다. 다섯째, 채무발생경위와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시 도덕적 문제의 유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 4.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 1) 교육수준과 직업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방송국 교통제보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한국방송통신대에 6년째 재학중이다. B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결혼하면서 학원을 차렸으나 실패한 후 계속 과외를 하였으며, 최근 친정오빠와 재혼한 남편이 자금을 대서 다시 학원을 시작하였다. B씨의 전남편은 정치에 뜻을 두고 정당활동을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사업을 벌였고 사기를 당해 실패했다. C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8년동안 군인으로 근무하였으나 신용문제로 그만두고, '노가대'를 거쳐, 매형이 운영하는 급식업체에서 배달일을 3년째 하고 있다. D씨는 대학졸업 후 외환카드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 회사합병으로 인해 퇴사하고, 2년간 무직으로 지낸 후 외국계 보험회사의 부지점장으로 들어갔으며,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지만 회생자라서 불이익을 많이 받아' 알아보고 있는 상태로, 2년 전 대학원을 한 학기 다녀서 연구대상자들 중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높았고, 부인은 학원강사이다. E씨는 대학졸업 후 지금까지 자동차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직장만 다녀서는 힘들어서' 여러 가지 부업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부인은 주부이다. F씨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전문대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17년째 일용직인 군청 소속의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부인은 오래 전에 보험회사 영업사원을 잠깐 한 것 외에는 계속 주부로 있다가, 남편이 회생절차를 시작하면서부터 건축회사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다. 연구대상자들 중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G씨는 '집이 시내여서 주먹질도 하고 놀다가'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고, 이후 가구제조공장, 가구장사, 옷장사, 소개소, 다방, 택시운전을 거쳐 현재는 버스운전을 하고 있으며, 정규직이 된지는 3년쯤 되었다.

#### 2) 가족상황과 주거상황

미혼인 A씨는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나서 부유하게 자랐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 친지들 집을 전전하다가 현재는 원룸에서 혼자서 생활하고 있으며, 채무부채가 모두 끝날 때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B씨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이 심한 구타로 이어져 결국 이혼하였는데, 최근 재혼하여 19평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1남 3녀 중 막내인 B씨의 형제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3남 1녀 중 막내인 C씨는 대형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누나 집에 ‘없혀’ 살고 있으며, 결혼을 해야 하는데 ‘신부 부모님이 신불자를 좋아할 리가 없어서’ 그 시기는 짐작할 수 없다고 하였다. D씨는 3남1녀 중 세 번째로서, 형제들의 경제적 수준은 ‘다 비슷비슷’하며, 부부와 세 자녀가 32평의 전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변제하고 있다. 또한 D씨는 초등학교 2학년, 5세, 3세의 자녀를 두었고, 일시적 실업상태였던 때부터 지금까지 저소득층 유치원지원금을 전액받고 있다. E씨는 3남 1녀 중 막내로서, 결혼초기에는 전세로 살다가 전세금을 사업자금으로 써버린 후, 돌아가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았는데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겨, 현재는 부인과 두 딸과 함께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 F씨는 3남 1녀 중 장남으로,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부모님이 쌀과 부식 등을 모두 보내주고 있으며, 부인과 두 아들과 함께 1년에 월세 100만원의 단독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G씨는 3남 1녀 중 막내로서, 아직도 부모님에게 간간히 용돈을 받고 있으며, 형제들은 모두 운전이나 재봉일을 하는 서민들이고, 8년 전 사별한 후 남매를 데리고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중퇴부터 대학원 재학까지 비교적 높았으며, 대부분 직업보유기간이 길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취업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 판매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파산 채무자들이 전문직이나 기술직보다는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 Sullivan 등(1997)의 보고와도 일치한다. 또한 여성은 2명이고, 남성은 5명이었으며, 연령은 20대가 1명, 30대가 2명, 40대가 4명이었다. 미혼이 2명, 재혼이 1명, 사별이 1명이었으며, 가구원의 수는 1명에서 5명이었고, 주거상황은 5명이 월세, 나머지 2명은 무상거주였다(<표 2>참고). 이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연령은 31~40세가 가장 많고, 청·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졸이상이 88.1%로서 교육수준이 높다고 한 한국개발연구원(2005)의 보고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한편, 2008년 1/4분기 가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 가구주연령은 48세이고, 가구원수는 3.3명이다(통계청, 2008).

연구대상자들의 건강은 모두 양호하였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매달 소득의 일부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기 때문에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파산신청자 중 대출금을 의료비에 사용한 경우가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한국개발연구원, 2005), 국외의 경우도 의료문제가 파산선언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점(Domowitz & Sartain, 1999)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의 신청자와 개인파산의 신청자는 건강상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IV. 연구결과

##### 1. 심리적 특성

###### 1) 부채사용에 대한 태도와 행동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부채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부채변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빚은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절대로 안 쓴다’와 같은 강한 태도보다는 ‘안 써야죠’나 ‘안 받고 싶다’의 그다지 강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부채사용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실제 부채사용 행동에 있어서는 A씨를 제외한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하는 도중에도 추가적인 부채를 사용하였다. 특히 D씨의 경우 1차 면접시에는 ‘이번에 터득한 게 거저다. 자산관리를 잘 해서 부채는 안 쓰도록 해야겠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는 친지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3차 면접시 학원을 차리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D씨 외에도 B씨와 F씨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대출)안 받고 싶은데, 이번에도 학원 차리면서, 오빠가 5,000만원, 남편이 3,000만원 댔어요. 학원 난방기 계약할 때 12개월 할부가 된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구요. 그 사람이 바로 ‘신용불량자세요?’ 하더라구요. 다 뜯다면서. 그동안 창피당할까봐 시도도 안 해봤었는데,

<표 2>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특 성	성 별	연령(배우자)	교육수준(배우자)	직업(배우자)	자녀/결혼상태(자녀연령)	주거(형태)
A씨		여	28	대재	회사원-계약직	무 / 미혼	월세 (원룸)
B씨		여	41 (39)	대출 (대출)	학원원장 (공동운영)	무 / 재혼	월세 (아파트)
C씨		남	31	고졸	식자재배달	무 / 미혼	무상거주 (사택)
D씨		남	39 (37)	대학원재 (대출)	보험회사부지점장 (학원강사)	1남2녀(3세, 5세, 초2)	월세 (아파트)
E씨		남	42 (40)	대출 (고졸)	회사원-정규직 (주부)	2녀(중1, 중3)	무상거주 (주택)
F씨		남	42 (37)	전문대출 (대중퇴)	미화원-일용직 (회사원)	2남(초5, 중1)	월세 (주택)
G씨		남	47	고중퇴	버스기사-정규직	1남1녀 / 사별(중1, 고3)	영구임대 (아파트)

그땐 어찌나 창피하던지. 그래서 카드로 했어요. 남편카드를 두 장 써요. 차 기름도 넣어야 하고..."(B씨)

"저는 시행착오를 해 봤으니 확실한 일 아니면 안 받아야죠. 이제는 계획 안에서, 혹시 잘못돼도 내 돈 다 처분하면 갚을 수 있는 범위만큼만 받아야죠."(E씨)

"많은 금액이 아니면 쓸 수 있죠. 지금도 애기 엄마 앞으로 카드가 있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카드로 하니깐 한 달에 100만원쯤. 부족할 때는 카드로도 받아쓰곤 해요."(F씨)

Thaler(1990)는 부채사용을 어렵게 하는 유동성 제약에는 자본시장이 주는 제약과 개인들 스스로 부과하는 제약의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를 '부채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단순히 빚지고 싶지 않은 가계가 스스로 부과한 규칙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부채에 대한 혐오감을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 2) 부채변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

부채변제의 경우에도 '내가 빌려 쓴 돈이니깐 갚겠다'는 경우는 F씨 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갚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부채사용에 앞서 개인회생절차를 고려한 E씨의 경우는 개인회생절차를 금융계획의 도구(a financial planning tool)로 생각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한 김경욱(2005)과 법률절차를 고려하고 불필요한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채무자 기회주의(debtor opportunism)'라고 한 Whitford(1997)의 설명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염치도 없죠. 지가 빚이 1억 3천이 넘어서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 이것도 못 지키고 연체를 하거나 못 내면 너무 염치가 없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죠. 그래야 맘 추스르고 딴 일을 하든지 하죠. 안 그러면 맘이 불편하니까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일단 맘이 편해요."(C씨)

"카드깡을 할 때는 일이 잘 안되면 안 갚을 생각이었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전에도 빚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거 얼른 한 번에 복구해야겠다 생각하고 한 거죠. 안되면 회생절차 밟을 생각이었으니까. 이걸(회생) 내야죠. 솔직히 말해서 탕감도 해 준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자 갚다가 끝나겠더라고요."(E씨)

"다 갚으라고 하면 다 갚으려고 했어요. 사무장에게 돈이 생기면 더 주고 싶다고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난 정말 그러고 싶어요. 내가 쓴 거니까."(F씨)

부채 변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경우는 F씨 뿐으로서, 이는 파산 상황에 놓인 소비자들 중 일부는 평판 또는 도덕적인 이유로 인해 채무를 갚고자 하는데 개인회생절차는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한 Whitford(1997)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 3) 현재지향적 시간선호

연구대상자들은 '내 세 가지 모토가 절약, 저축, 투자'라고 한 D씨와 '현재와 미래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미래다. 애들 생각해서'라고 한 E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지향적인 시간선호를 보여주었다. A씨는 소득 인상분의 향후 사용처를 묻자, '친구도 한 번 만나던 거 두 번 만나고, 옷도 더 사 입고 나를 위해 쓰고 싶다'고 하였으며, G씨는 본인의 미래를 생각하면 재혼을 해야겠지만, 재혼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면서, '아이들이 중요하니까 현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바쁘게 살다보니까 먼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잘 살아야 되니까. 난 아등바등 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누릴 거 누리고, 즐겁게 살자는 주의죠."(B씨)

"하루 하루를 편하게 사는 게 최고죠."(C씨)

"여건이 되면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생계도 빠듯하기 때문에 현재도 힘들게 사는 거죠."(F씨)

연구대상자들의 소비태도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현재지향적인 시간선호를 엿볼 수 있었다. 절약을 강조한 D씨를 포함한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쓸 건 쓰지주의'라고 하였다. 특히 C씨의 경우 본인은 '쓰지주의'라고 하였고, 지난 달 스포츠카인 투스카니를 전액할부로 구입하여 앞으로는 매달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자녀들을 생각해서 미래를 선택하겠다고 한 E씨의 경우도 스스로 '난 소비성향이 강하다'라고 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대비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더 중요시하는 현재지향적인 소비태도를 보여주었다.

"전 무조건 절약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부분은 쓰고, 아니면 아끼죠."(A씨)

"난 돈이 없어본 때가 없었어요. 그때도 전남편이 힘들었지, 나는 내가 벌어서 잘 썼어요. 난 꿈쟁이가 아녜요. 내가 옷을 좋아하거든요. 사고 싶은 옷이 있으면 그냥

사 버려요. 지금은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사죠. 언니들이랑 식사를 하러 가도 항상 내가 다 내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할 정도예요.”(B씨)

“사실 전 지금도 소비성이 강해요. 횃집가서 적게 마시면 10만원도 나오고, 비싼 술집가면 100만원도 넘게 나오고 그러니까요.”(E씨)

이와 같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현재지향적인 시간선호 경향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김미라·김혜선, 2008)와 연체집단의 경우(Lea 등, 1995)와도 같은 것이다.

#### 4) 불완전 자기통제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완전한 자기통제를 보여주었다. A씨의 경우, ‘그동안 가족이라 믿고, 명의로 빌려주고 보증도 서켰는데, 무방비상태로 당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면접완료 후에 어머니가 새로운 가게를 시작하게 되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 인가 후 수행 중에 채무자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문의해왔고, 또 최근 친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종신보험을 들어서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F씨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험들을 중도해지하여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였으나, 최근에 보험에 가입하여 한 달에 35만원을 납입하고 있다.

“나도 평소에는 그 사람(전남편) 돈 문제에 말려들지 않아야지 하고 다짐했었는데, 그때는 들어보니까 될 거 같더라고요. 말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려든거죠.”(B씨)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이리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누구 탓을 할 일이 아니죠. 내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저질러 버린거죠.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어도 지금처럼은 되지 않았겠죠.”(C씨)

“속된 말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 거죠. 그게 돈 회전이 빠르다고 해서. 잘 되면 한탕이고, 못되면 평인거죠. 알고 시작했어요. 그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그래도 안 될 거는 생각 안하고, 되겠지에 강하게 집착했죠.”(E씨)

“번만큼만 쓰면 되는데, 소비도 계획없이 했고, 한꺼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중간에 일 있을 때 미리 준비를 못하면 이쪽저쪽에서 빌리게 되고... 그러다보니 무리가 가고...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쓰니까 조금 나태해

졌죠. 부족하니까 카드론도 쓰고, 안 되는데 하면서도 대부업체까지 갔으니까...”(F씨)

“돈은 마약과 같아요. 한 번 맛들이면 안 쓰고는 못 배기죠. 한정없이 쓰고 싶어요. 소개소하면서 좀 여유가 있을 때는 호주머니에 500만원씩은 가지고 다녔어요.”(G씨)

A씨와 C씨, D씨, F씨는 관련된 금액이 클 때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더 노력하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씩 자주 발생하는 경우 자기통제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하는 Bar-Gill(2004)의 연구와 파산이 마지막 탈출구가 될 때까지 매달 조금씩 카드빚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Sliders’로 묘사한 Sullivan 등(2000)의 연구에서와 같이, 비교적 적은 금액을 수차례에 걸쳐 누적하여 파산에 이르게 됨으로써, 불완전한 자기통제로 인해 스스로를 어려운 재정상황에 빠져들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부채사용에 비교적 허용적이고, 시간선호에 있어 현재지향적이며, 자기통제력 부족 등의 심리적 특성들이, 개인이나 가게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과소평가하게 하고,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경제적 특성

### 1) 소득의 증가와 지출

<표 3>은 연구대상자들의 가게수지와 자산상태를 요약한 결과이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월평균가계소득은 미혼남성인 C씨의 73만원에서부터 부부가 모두 수입원이 있는 D씨의 750만원까지로 차이가 크며, 이 중 2007년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구의 월평균소득인 약 368만원(통계청, 2008) 이상인 경우는 B씨와 D씨이고, 학원을 운영하는 B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소득이며, 대부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보다 소득이 증가하였다.

개인회생이 인가된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데, 실직이나 의료비 등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변제계획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승급으로 인한 급여인상과 같이 어느 정도 예상가능한 수준이라면 변제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큰 유산의 상속이나 소득원의 변경처럼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면 변제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의 변경은 채무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나, 채권자의 조사를 통해 제기될 수 있는데, 담당 사무장에 따르면, 개별 금융기관은 개인회생이 인가된 개인채무액을 대상으로 이런

잡무를 하려 하지 않으며, 인가 전에도 개인회생의 초창기에는 채권자인 은행에 불합리한 제도라는 생각해서 '낭비로 인한 것'이므로 불허가 해 달라는 식의 이의제기가 많았는데, 근래에는 이의신청이 거의 없어서 이제는 대세로 받아들이는 경향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대부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연구대상자들의 소비지출을 포함한 월평균 지출은 87만원에서부터 715만원으로, 2천만원가량의 차량을 전액할부로 구입해 이번 달 처음으로 할부금을 지불한 C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흑자 또는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A씨의 경우 주거비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로 매우 높았다.

소비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30%~71%로서, 평균 51%(중위수 = 47%)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 1/4분기 가계조사 결과를 이용해 계산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84%(통계청, 2008)에는 물론이고, 개인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개발연구원(2005)의 연구결과를 이용해 계산한 73%에 비교해볼 때, 본 연구대상자들은 흑자 또는 균형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소비지출이 매우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변호사와 사무장 모두 개인회생절차의 문제점으로 비현실적인 생계비 산정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실제로 대학생 두 딸과 무직의 배우자를 부양하는 여성 채무자에게는 본인 외에 나머지 3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1인 최저생계비로 70만원이 산정되었고, 결국 장기간 연체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채무가 원상회복되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월평균 가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은 51~377만원으로서, 이 중 가용소득보다 월 부채상환액이 더 큰 C씨의 128%를 제외하고는 최저 49%(A씨)에서 최고 83%(F씨)를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가용소득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 2) 자산보유상태

D씨와 E씨의 경우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E씨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주택 1채에 1/3명의를 상속받은 것으로 '압류는 수도 없이 설정되었지만 공동명의라서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고', D씨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연체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할 수 있었다.

매월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는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B씨와 D씨의 두 경우 뿐이었고, 보험회사 측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 C씨를 제외한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14만원에서 49만원까지의 보험을 넣고 있었으나,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약관대출을 받아서 해약해도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다.

“남들은 왜 적금 같은 거 안하냐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적금같은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곤란해요. 말 그대로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할 때 적금을 깨는 거 보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게 낫죠. 보험도 안 받아줘요. 받아 줘야 안 낼 수 있는 사람인데 받아주겠어요? 시도도 해보지 않았어요. 노후 때에 넣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잘 아니까 꿈도 안 꾸죠.”(C씨)

또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5명이었는데, 급여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통장에 소득을 모은 C씨의 경우는 780만원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4명은 100~300만원 정도였는데, 이는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5%에도 미치지 않는 평균 54만원의 현금 및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 한국개발연구원(2005)의 보고보다는 많았으나, 일반적으로 비상시를 대비해 예비비로 보유하고 있도록 권장하는 소득의 약 3배라는 기준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 3)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의 규모가 1억 이하인 경우가 3명이었고, 1억 이상인 경우가 4명이었으며, 최저 5,300만원에서 최대 약 2억까지 분포되었다. 또한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회생채권의 규모가 크며, C씨의 경우에는 소득에 비해 개인회생채권의 규모는 상당해서, 연구대상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11.5%의 변제율을 보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담보대출이나 친지에게 빌린 돈 등 잔존 채무를 제외한 개인회생채권만으로도 2006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액인 3,948만원(통계청, 2008)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자의 중위 채무액은 1분위의 경우 3,965만원에서부터 10분위의 경우 19,380만원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5).

월 변제액은 월평균 가계소득이 가장 많은 D씨 부부가 각각 2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10년 동안 연체하지 않고 꼬박꼬박 이자를 상환해온 F씨가 120만원으로서 액수도 가장 컸고, 변제율도 90%로 가장 높았다. 변제계획시 소득을 사실대로 보고한 A씨, E씨, F씨의 경우 각각 34만원, 100만원, 120만원으로 소득을 낮춰서 보고한 연구대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매월 변제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의 변제율은 원금의 10% 미만인 경우는 없었으며, 10~20% 미만이 3명, 20~30% 미만이 1명, 30~40% 미만이 2명이며, 90% 이상이 1명이었다. 이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약 50%가 원금의 30%미만을 변제하며, 약 60%가 매월 40만원 미만을 변제한다고 한 김용철(2007)

의 보고와도 일치한다.

4) 개인회생채권 의 채무

모든 연구대상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제외하고도 잔존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A씨의 경우 변제를 수행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고 판단한 친오빠가 친지에게서 빌린 800만원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여 다음 달부터 갚아나갈 계획이며, B씨의 경우 전남편이 큰언니에게 빌린 1억에 대해 매월 100만원씩 상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친구의 5,000만원과 작은 언니의 1,500만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를 수행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환하고 있다. F씨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명의로 총 5,000만원을 대출받아 빚을 갚는데 썼는데, 아버지가 거의 다 갚으신 상태로써, F씨는 이에 대해 갚기를 포기한 상태이다.

이상과 같은 부채가 연구대상자들에게 주는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 대비 부채(주택담보대출 포함) 비율을 계산한 결과 153%~1712%로서, 가장 높은 소득을 보고한 D씨의 경우가 가장 낮았으며, 가장 낮은 소득을 보고한 C씨의 경우가 가장 높은 아이러니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평균 648%(중위수 = 381%)로서, 2007년 말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148%에 비해 4배 이상 높았으며(한국은행,2008), 2004년 개인회생 신청자의 부채부담 수준인 460%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 2005).

연구대상자들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73만원에서부터 750만원까지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사적으로 중류층이 소비자파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 Sullivan 등(1994)의 연구나, 개인회생의 경우 전 소득 분위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10분위 중 3~7분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개인 부실 채무의 문제가 일부 저소득 계층에 고립된 문제만은 아니라고 한 한국개발연구원(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가계수지는 현재 개인회생절차의 월 변제액과 잔존 부채의 월 부채액을 포함하고도 대체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보유 자산이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만약 다른 촉발사건(trigger events)이 발생하여 현재와 같은 현금의 흐름을 방해한다면, 개인회생제도의 목표인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제적인 갱생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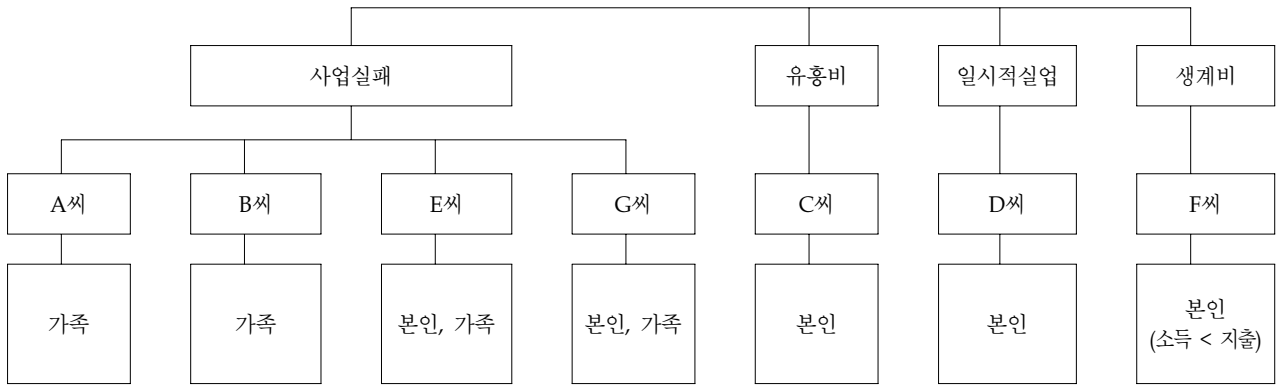
3. 과채무 발생경위

채무발생의 원인과 채무액의 크기를 살펴보자.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4명은 본인이나 가족원의 사업실패로, 나머지 3명은 각각 유흥으로 인한 과소비, 일시적인 실직, 생계비로

<표 3> 연구대상자들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항목 연구 대상자	월평균 소득 (배우자)	월평균 지출 (흑/적자)	주거비 (형태)	그 외 부동산 (가치)	저축	보험	예비비	회생채권	회생월변제액 (변제율)	부채잔액 (유형)	잔존 부채월 변제액
A씨	132	100 (흑자)	보증금 200 월 27(원룸)	-	-	4	-	5,300	34 (38.5%)	800 (친지)	-
B씨	700 (공동)	653 (흑자)	보증금 1,300 월 6.5(아파트)	-	50	40	300	15,000	30 (12%)	1억6천 (친지) 1천 (차량할부)	150 (친지) 60 (차량할부금)
C씨	73	87 (흑자)	무상거주 (누나가게)	-	-	-	780	13,000	25 (11.5%)	2천 (차량할부)	40 (차량할부금)
D씨	600 (150)	715 (흑자)	보증금 2,400 월 35(아파트)	아파트 (7,500)	50	49	100	10,000	20 (12%) - 부인도 20	약3,000 (주택담보) 780 (친지)	30 (금융) 70 (친지)
E씨	300 (0)	300 (-)	무상거주 (처가주택)	주택 (2,000)	-	20	300	20,067	100 (29%)	1,000 (친지) 1,000 (차량담보)	-
F씨	260 (70)	300 (흑자)	1년 100 (주택)	-	-	35	-	8,000	120 (90%)	6,000 (친지)	10 (친지)
G씨	210	210 (-)	보증금 580 월 6.8(영구임대)	-	-	15	200	6,500	35 (32%)	200 (기타)	110 (비용)



<그림 1> 과채무의 주요원인

인해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채무가 증가하였으며, <그림 1>은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1) 본인이나 가족원의 사업실패

A씨는 총 7,3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이 중 본인이 사용한 것은 단 1원도 없다. 친오빠의 대출보증 3,500만원과 금융채무불이행자인 어머니에게 대출받아준 1,000만원, A씨의 모든 통장과 카드를 관리하던 친오빠가 만든 2,800만원의 카드빚을 갚기 위해, 3년 동안 ‘서빙하는 알바’를 해서 매월 오빠에게 약 100만원씩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연체를 이유로 금융기관의 추심전화를 받아 송금을 중단하고, 보증건을 제외한 3,800만원을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통해 당시 월급의 1/2인 43만원씩 1년 8개월간 회복하던 중, 어머니의 가게물품대금 300만원의 지급명령서가 가게명의자인 A씨에게 와서 법원을 다니던 중에 마침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보내온 우편물을 통해 개인회생에 대해 알게 되어, 총 5,300만원에 대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해 24회를 변제하였다.

B씨는 전남편의 사업실패로 31,0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전남편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성공리에 마쳐서 돈을 번 다음, 아파트 분양을 맡으면서 B씨의 친지들에게 투자금을 모았으나, 사기를 당해 모두 잃었다. 그동안 전남편이 이용한 B씨와 B씨 언니들의 카드와 대출금이 1억 7천이었는데, B씨는 자신의 부채가 아니라는 생각에 몇 년간 내버려두다가,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시작한지 6개월이 되었다.

E씨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의료비로 빚을 지게 되자, 목돈을 벌 생각에 부업으로 대출금 5천만원을 포함해 1억 5천만원을 투자해 컴퓨터 프로그램 유통업을 시작하였으나, 동업자가 도박에 빠져 ‘다 들고 잠적해버렸고’, 이후 부인이 3천만원을 대출받아 시작한 옷가게도 실패하자, ‘한 번에 복구하기 위해 조직폭력배와 줄이 닿는’ 친구와 함께 성인오락실(바다이야기)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다가 검찰단속에 걸려 친구가 구속되어 ‘돈을 다 날렸다.’ 성인오락실을 시작하면서, 1·2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자 12장의 카드를 이용해 ‘카드깡’으로

약 7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총 2억 2천만원의 부채에 대해 1년 이상 상환하다가 감당이 되지 않아 포기하고, 개인회생절차를 밟아서 11회를 변제하였다.

G씨는 오래 전에 은행대출과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 옷가게를 운영하였으나 사업부진에 이은 도난사고로 인해 실패하였는데, 부인이 사망한 후 부인명의의 대출금 2,500만원과 친지에게서 빌린 돈은 다 갚았으나, 2년간 무직으로 있으면서 본인명의의 5천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가 택시운전을 시작하면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통해 6회 변제하였는데, 당시 택시월급이 45만원으로 월 75만원씩 변제하기가 너무 힘에 겨워 결국 탈락하였고, 이후 몇 년간 추심에 시달리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지금까지 33회를 변제하였다.

“안 되면 회생절차 밟을 생각을 미리 하고 시작했어요.”(E씨)

“그때는 카드 8장으로 돌려막기로 이자만 계속 냈어요. 일을 쯤 하면 쯤씩 갚고, 카드가 다 차버리니까 감당이 안되더라고요. 하나 둘 막아놔야 의미없는 거니까 동시에 한 번에 낚서 터트렸죠.”(G씨)

2) 유혹 중독

C씨는 ‘거의 중독수준으로’ 유혹업소를 다니다가 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되자 카드를 이용해 돌려막았고,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자 대부업체대출, 카드대납, 카드깡 등을 이용하였다. 퇴직금 1,800만원을 비롯해 모든 소득을 변제에 사용했고, 추심업자들이 ‘헌병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 ‘갚고 못 갚고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빚으로 빚을 갚았으나, 잔여채무가 1억 3천(원금 절반, 이자 절반)’이었다. ‘워낙 액수가 커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담당사무장이 카드내역서를 검토하여 유혹으로 인한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기각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개인회생절차를 권유하였고, C씨가 이를 받아들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60회중 6회

변제하였다.

### 3) 일시적인 실업

D씨는 2년간 실업상태로 있으면서, 생활비 때문에 친지들에게 6,500만원을 빌려 썼고, 부부의 신용카드로 약 4,000만원, '연예인이 광고하는' 대부업체에서까지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가족에게 차용한 부채는 D씨 명의의 아파트를 한 채 주는 것으로 모두 해결하고, 대부업체의 100만원은 제때 갚지 못해 엄청 시달렸으나, 결국 이자까지 다 갚았는데도 아직 많은 부채가 남아 있다. 그 중 '사채이자에 버금가는 이자에 이자'를 포함해 약 1억원의 금융채무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등록하여 변제하지 8개월이 되었으며, 주택담보대출금과 친지에게 차용한 돈은 따로 변제 중이다.

Sullivan 등(1994)의 연구에서도 파산자의 과채무가 일탈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불운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일시적인 실업으로 인한 파산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다.

### 4) 생계비부족

마지막으로 F씨의 경우, 지금은 월급이 점차 올라 약 4천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고 있으나, 처음 8년 동안은 1,000만원~1,500만원이었는데,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친지들과 대부업체에서 빌렸고, 이를 카드를 이용해 돌려 막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자,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조정하기 위해 일부러 연체까지 하였으나, 'TV선전 많이 나오는 러쉬 엔케시'에서 빌린 300만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변제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

“전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니가 왜?’ 하고 물어보는데, ‘나도 몰라’라고 대답해요. 정말 다 그냥 생활비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애들한테 쓴 거죠. 그게 십 몇 년 누적되다 보니까.. 회생할 때 8천만원이었어요. 이자는 거의 없어요. 연체를 한 적이 없으니까. 카드 7개로 돌려치기로 10년 이상 끌어왔죠. 그때는 정식직원인지 아닌지도 안 따지고 발급해줬어요. 한도도 엄청 많았어요. 집에서(부모님) 많이 가져다 갓았어요. 도로아미타불이지만. 은행에 갓은 것도 엄청나요. 근데 완벽하게 안 막으니까 도로아미타불이더라구요. 도로 같아요.”(F씨)

이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과채무의 문제를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로서, “다른 사람 따라하기(keeping up with the Joneses)” 즉, 자신의 생활수준을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추기 보다는, 자신보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한 Norberg와 Compo(2007)의 지적과 같은 경우이다.

## 4. 진술의 진실성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사유서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는가를 파악한 결과, C씨와 E씨의 경우 채무발생 원인에 있어서 사실과는 다르게 보고하거나 또는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다. 먼저 C씨는 유흥향락에 중독되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사실을 마치 친구의 사기에 걸려든 것처럼 진술하였고, 재산의 허위신고는 면책취소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을 보고함에 있어 친형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인의 자동차와 아버지의 통장에 들어있는 780만원의 예금을 누락하였다.

“사실 법원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여부를 판사 앞에서 진술하게 되어 있어요. 나 얼마 받고 있다. 100만원을 받는지, 200만원을 받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법원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C씨)

또한 E씨는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것이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이 손해될 이야기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줘서, '바다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적지 않았다.

담당사무장은 이에 대해 개인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의 경우 불허가 조건으로 사치, 낭비, 주식투자 등의 규정은 없으며, 그런 부분이 크게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으므로 그런 내용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B씨와 D씨, G씨의 경우에는 채무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거짓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소득을 낮추어 신고하였다. B씨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후배가 자신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아는 학원의 교사인 것처럼 꾸며 소득을 낮추라'고 알려줘서, 당시 과외선생님으로서 약 450만원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0만원으로 신고하였다.

D씨는 부부 모두 각각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소득을 실제보다 더 낮게 진술하였다. 학원강사인 부인의 경우 당시 130만원의 소득을 7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본인도 그런 식으로 낮췄다.

“당시 내 소득은 5천만원 쯤!! 얼마로 적어 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쯤 그러네요.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겁니다. 사무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무장에게 물어보십시오.”(D씨)

“본인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랬습니다. 제대로 하면 상황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신청당시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금융권에 있는 사람이라 잘 알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고의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인가 결정 후 발각이 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취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개인회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담당 사무장)

G씨는 친구의 친구인 사무장이 소득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알려줘서, 당시 버스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소득을 낮춰 신고했으며, 개인회생절차 전에도 월급에 압류가 들어오니까 회사측에 요청해 70%이상을 현금으로 받았었다.

"봉급에 압류가 들어왔죠. 지들도 손 못 대고 나도 손 못 대고 그러고 있었어요. 회생 후에 풀렸어요. 근데, 그때도 회사에다 말해서 일 안한 걸로 계산하고 통장으로는 30% 정도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받았죠. 팔이 어디로 굽겠습니까? 말하면 다 해 줍니다."(G씨)

그 외 A씨와 F씨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개인파산절차가 면책불허가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그리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으며, 보고된 소득에 따라 향후 5년간의 변제액과 미래 소비생활수준이 달라지므로, 소득을 낮춰 진술하는 경향이 있었다. 담당변호사는 소득의 축소는 재산은닉에 비해 양호한 것이라며,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될 것이라고 하였고, 소득축소 신고에 대한 개입정도나 묵인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일반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당사자가 가져온 서류를 토대로 사무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주장해 줄 수도 없고,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서류접수 대행이지,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 감각이 무뎠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담당 변호사)

또한 미국의 2005년 개정 파산법이 변호사의 책임과 제재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의 신청에 있어 실수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책임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은 관련자가 다수로서 다른 소송에 비해 2~3배로 복잡한 반면, 수입료는 낮아서 아예 이 부분을 맡지 않는 변호사들도 많은 실정이라고 하면서, 여건이 갖춰져야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채무 발생원인과 사회인구·경제적·심리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에 대해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정책적 및 교육적 제언을 제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 1. 재무관리교육과 재무상담에 대한 제언

경제적인 곤궁이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비자는 평소에 기본적인 재무관리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채무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책은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적절한 관리에 있다(이기춘 등, 2003). 경제적인 의사결정의 반복적인 실패로 인해 곤궁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에게도 현재의 곤궁에서 벗어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무관리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재무관리교육의 중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시간부족이나 여유자금의 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참여에 대한 의도는 낮았다.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들이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무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005년 개정된 미국의 파산법이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 정도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청 후에 재무관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신용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G씨의 말처럼 '사람이 너무 많아서인지 출석만 부르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각 소비자의 상황별로 구체화된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노후대비를 포함한 재무계획이나 저축행동도 없었고, 예산생활이나 재정적인 대화와 같은 구체적인 금전관리기술도 부족했으며, 기본적인 재무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굳이 생활주기 가설(life-cycle theory)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인생의 중년기가 초년기와 노년기의 소득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청·장년기에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인 곤궁이 현재 뿐만 아니라, 이들의 노년기를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장 차원에서,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와 잠재 채무자 그리고 부채 사용자에게 장기적인 재무계획과 구체적인 금전관리기술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이러한 재무관리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재



무상담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채무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담기관의 부채를 지적하였으며, 실제로 연구자에게 채무상담을 요청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채무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과거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에서 했던 실수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다음의 의사결정에서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보다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중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언제든지 채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상담체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에 대한 태도나 시간선호, 자기통제 등과 같은 심리적인 특성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 채무상담과 더불어 적절한 심리적 상담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2. 정책에 대한 제언

개인회생절차는 일정 정도의 고정소득이 있는 소비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변제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변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대안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월평균가계소득은 대부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보다 낮았으나, 높은 경우도 있어서 어느 한 계층 특히 저소득층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Sullivan 등(1997)의 지적처럼 '그들은 노숙자도 기초생활수급자도 전과자도 아니며', 단지 미래를 위한 대비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통제력이 부족하여, 사업실패나 일시적인 실직, 유흥중독, 생계비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본 연구대상자들은 비교적 젊은 고학력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절차와 그 영향을 알지 못하고 상당기간 동안 '돌려막기'로 채무규모를 늘리거나 아예 방치하면서 문제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채무를 가진 개인이나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해 기본적인 생계가 위협받고, 결국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면 추가적인 공공복지비용이 소요되므로, 꼭 필요할 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무조정제도에 관련된 제도들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소비자정보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제고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자들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자와 동일시'되어 마치 죄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고(A씨와 D씨), 가까웠던 친구들이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으며(G씨), 이런

경험들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점점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부정적인 사회적인 인식을 띄우는 것은, 파산자가 관련 제도를 선택하는데 주저하게 하여 지연시간에 따른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결국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들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해, 그들이 우리 사회체계 내에서 성실하게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득이 될 것이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인 인식은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나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일부 기인한다.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스스로 또는 이미 개인회생절차를 수행 중인 주변인의 도움이나 담당 사무장의 묵인으로, 채무발생 원인을 진술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소득을 낮춰 신고함으로써 변제액을 줄였다. 현행법상,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나면, 특별히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변제계획의 수행동안 채무자의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지 않으므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제계획이 인가될 때 까지 의도적으로 이를 연기하여 더 낮은 소득을 바탕으로 상환계획을 인가받고 난 후, 소득증대를 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변제계획의 인가 후 면책을 받기까지 일정 기간마다 또는 무작위로 채무자의 경제적인 여건 변화를 조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는 이유는 비현실적인 생계비 산정 때문이기도 하다. 개인회생절차의 기본원리상 향후 5년간의 곤궁을 감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Lown과 Rowe(2003)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5년 동안 예상치 못한 지출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는 자체가 비현실적으로서, 비상시를 위한 대비없이 모든 가처분 소득을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고용시장의 불안정성과 경제침체를 고려할 때, 탈락가능성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생계비의 부족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생계비의 산정범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비상시를 고려한 예비비를 공탁하게 한 후, 소득증단과 같은 비상시에 사용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담당변호사나 상담자는 개인회생제도의 장·단점과 탈락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들이 소득을 낮춰 신고한 또 다른 이유는 개인회생채권 외의 잔존 채무액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법원은 친지에게 빌린 돈은 증여로 보고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다른 채무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기는 하지만, 친지들에게도 계속 변제하고 있었다. 또한 회생절차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에 서는 개인회생채권에 담보부채권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의경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를 별도로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생계비 외의 모든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담보부채권을 변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산대부분의 경우 주거용이나 영업용인의 매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 이는 보유 재산을 유지하면서 소득으로 갚아나가는 개인회생절차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지 않으며, 채무자의 생계나 영업으로 인한 소득을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나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거래관계가 명백하다면 변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갱생이라는 개인회생절차의 입법취지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채무상담가의 역할을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처럼, 적합한 채무상담기관들을 지정하고 채무자들로 하여금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에 앞서 의무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채권자들로 하여금 상담을 통해 작성된 변제계획을 받아들일도록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제출서류의 까다로움, 추심 특히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문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로 인한 추가적인 채무문제 등이 제기되었으며, 금융정책에 있어서는 규제완화로 인한 신용과다공급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제도의 보완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임을 감안하더라도, 표본의 수가 매우 작으며, 전국적인 표집이 아닌 지역적인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인 연구이며,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인식과 이용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보다 많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령이나 직업으로 구분한 집단별 개인회생채무자의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소득계층이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서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개인회생제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종단연구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회생계획수행의 지속여부와 개인회생채무자들의 경제적 및 심리적인 상태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김경욱(2003). 개인회생절차의 도입과 그 문제점. **민사소송**, 7(2), 483-525.  
 김경욱(2005). 2005년 미국연방파산법상 소비자파산제도의 주요 개정내용과 그 의미. **민사소송**, 9(2), 266-303.  
 김미라·김혜선(2008). 30대 기혼 채무 불이행자의 특성에 관한 심층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3), 169-189.

김용철(2007). 개인회생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민사소송**, 11(1), 395-427.  
 김정훈(2000). 여대생과 주부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0(3), 165-175.  
 김효정(2003). 신용카드 이용여부에 따른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95-105.  
 대법원(2008).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법통계.  
 박승두(2004). 개인채무자회생법의 기본구조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6, 181-210.  
 박형준(2004).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소개. **민사소송**, 8(2), 297-332.  
 성영애·정희영(2006).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연체미경험자의 재무상태, 신용에 대한 태도 및 재무관리행동 비교분석. **2006년 한국소비자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20.  
 유경원(2006). 우리나라 개인파산의 결정요인 분석. **2006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자료집**, 1-33.  
 이기춘·박근주(1997). 소비자신용 연체행동에 대한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39-151.  
 이기춘·박명희·윤정혜·손상희·김경자·성영애(2003). **소비자재무설계론**. 서울 : 학현사.  
 이승신·김기옥·김경자·심영·정순희(2005). **가계경제분석**. 서울 : 신정.  
 이은영·허은정(2005). 부채가계의 연체행동 및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16(1), 179-194.  
 정갑주(2006). 파산·회생절차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개관. **민사법연구**, 14(1), 223-256.  
 정준영(2004). 개인파산(회생)에 있어서 장래소득에 대한 전부 명령(轉付命令), 채권양도의 효력. **민사소송**, 8(2), 215-241.  
 최정익(2006). **통합도산법상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2008). **가계조사, 가계자산조사**. <http://www.kosis.kr/>.  
 한국개발연구원(2005).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2008). **금융안정보고서**. 서울 : 한국은행.  
 Bar-Gill, O.(2004). Seduction by plastic.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98(4), 1373-1434.  
 Bermant, G. & Braucher, J.(2006). Making post-petition mortgage payments inside Chapter 13 plans : Facts, law, policy. *American Bankruptcy Law Journal*, 80, 261-288.  
 Butler, J. B. III(1989). Chapter 13 trustee looks at section 1325(b) of the Bankruptcy Code. *American Bankruptcy Law Journal*, 63, 401-414.  
 Domowitz, I. & Sartain, R. L.(1999). Determinants of the consumer bankruptcy decision. *The Journal of Finance*,

- 14(1), 403-420.
- Drake, W. H. & Morris, J. W.(1983). Eligibility for relief under Chapter 13. *American Bankruptcy Law Journal*, 57, 195-220.
- Evans, D. A. & Lown, J. M.(2008). Predictors of Chapter 13 completion rates : The role of socioeconomic variables and consumer debt typ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9, 202-218.
- Hilderbrand III, H. E.(2005). Impact of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 on Chapter 13 trustees. *American Bankruptcy Law Journal*, 79(2), 373-396.
- Huls, N.(1997). Overindebtedness and overlegalization : Consumer bankruptcy as a field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Journal of Consumer Policy*, 20, 143-159.
- Lea, S. E. G., Webley, P. & Levine, R. M.(1993). The economic psychology of consumer deb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4, 85-119.
- Lea, S. E. G., Webley, P. & Walker, C. M.(1995). Psychological factors in consumer debt : Money management, economic socialization, and credit us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 681-701.
- Livingstone, S. & Lunt, P. K.(1992). Predicting personal debt and debt repayment :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 determinant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3, 111-134.
- Llewellyn, B. C. & Lown, J. M.(2005). Are debtors abusing bankruptcy by repeat filings?. *Consumer Interest Annual*, 51, 54-60.
- Lown, J. M. & Rowe, B. R.(2003). A profile of Utah consumer bankruptcy petitioners. Education and empowering consumers to avoid bankruptcy. *Journal of Law and Family Studies*, 5(1), 113-130.
- McLaughlin, J. B. Jr.(1984). Lien avoidance by debtors in Chapter 13 of the bankruptcy reform act of 1978. *American Bankruptcy Law Journal*, 58, 45-68.
- Norberg, S. F.(1999). Consumer bankruptcy's new clothes : An empirical study of discharge and debt collection in Chapter 13.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Law Review*, 7, 415-463.
- Norberg, S. F. & Compo, N. S.(2007). Report on an empirical study of district variations, and the roles of judges, trustees and debtors' attorneys in Chapter 13 bankruptcy cases. *American Bankruptcy Law Journal*, 81, 431-470.
- Padgett, D. K.(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 나남출판.
- Pollak, O. B.(1997). Gender and bankruptcy : An empirical analysis of evolving trends in Chapter 7 and Chapter 13. *Commercial Law Journal*, 102(3), 333-338.
- Sable, J. S.(1983). Chapter 13 debtor's right to cure default under section 1322(b): A problem of interpretation. *American Bankruptcy Law Journal*, 57, 127-141.
- Sepinuck, S. L.(2000). Rethinking unfair discrimination in Chapter 13. *American Bankruptcy Law Journal*, 74, 341-399.
- Sullivan, T. A., Warren, E. & Westbrook, J. L.(1994). Consumer debtors ten years later: A financial comparison of consumer bankrupts 1981-1991. *American Bankruptcy Law Journal*, 68, 121-154.
- Sullivan, T. A., Warren, E. & Westbrook J. L.(1997). Consumer bankruptcy in the United States : A study of alleged abuse and of local legal culture. *Journal of Consumer Policy*, 20, 223-268.
- Sullivan, T. A., Warren, E. & Westbrook J. L.(2000). *The fragile middle class - Americans in debt*, Connecticut : Yale University Press.
- Thaler, R. H.(1990). Anomalies : Saving, fungibility, and mental accoun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4(1), 193-205.
- Whitford, W. C.(1997). Changing definitions of fresh start in U.S. bankruptcy law. *Journal of Consumer Policy*, 20, 179-198.
- Williams, J. S.(1985). Non-business liquidation under Chapter 13 of the bankruptcy code: A tool to prevent the loss of homeowner equity. *American Bankruptcy Law Journal*, 59, 283-288.

접수일 : 2008년 06월 30일

심사일 : 2008년 08월 12일

심사완료일 : 2008년 09월 26일